

제4장 원전주변 민원현황과 대책

제 1 절 개 요

1. 민원발생 배경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심리와 다수 민원인의 물리적인 행동이 전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원전으로 인해 주변지역 개발이 낙후되었다는 상대적 피해의식과 온배수로 인한 어획고 감소에 대한 피해보상 기대, 원전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가중 등이 민원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다.

2. 민원 처리실적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원전 가동과 관련된 민원은 총 98건이 발생(표 6-16 참조)하여 2000년말 현재 96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2건은 조치중에 있다.

〈표 6-16〉

원전 가동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발생건수	조 치 완 료	진 행 중
고리원자력	15	15	-
영광원자력	49	48	1
월성원자력	10	10	-
울진원자력	24	23	1
계	98	96	2

주) 한전수력원자력(주)(본사) 접수민원 기준

제 2 절 민원내용 및 해소방안

1. 민원내용의 유형

가. 경제적 보상 요구

- 원전 온배수로 인한 주변해역 어업 피해보상
- 원전 해안구조물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
- 원전 인근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로 인한 상업소득 감소 보상
- 원전 주변지역 부동산가격이 낮는데 대해 타 지역과의 지가차액 보상
- 원전 건설 종료후 건설인구 감소로 인한 빈 방 및 영업손실 보상
- 지역지원사업 확대 시행 및 배분기준 조정

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요구

- 주변지역주민 집단이주
- 환경방사선감시기 추가설치 및 방재장비 지급
- 주변지역주민 건강 진단 및 역학조사 실시
-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반대
- 안전장치에 의한 발전정지를 방사능누출 사고로 인식

다. 법령 및 제도개선 요구

- 개발제한구역 해제
- 지역지원법 개정

2. 해소방안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무리한 요구는 주민을 이해·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1997년 지역 지원법률 개정과 함께 지역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원전 주변지역을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보상심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제고를 통해 민원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환경친화형 원전운영을 목표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원전주변 기형가축 데이터베이스화, 해양환경조사 개선, 환경감시설비 보강 등 각종 환경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상호 이해기반을 조성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주 요 현안민원 및 대책

1.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1990년부터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과 전남 영광군 홍농읍, 백수읍 어민들이 영광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하여 김양식장 등에서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어민들과 협의하여 여수수산대학에 피해조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1993년 11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시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995년에 3백9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어민들과 합의하였으며, 1996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4개 호기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실제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고 1996년 10월부터 어민이 추천한 군산대학교와 한전이 추천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998년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1998년 12월부터 약 24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영광 5.6호기 건설과 함께 온배수 영향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류제를 건설중에 있고 이 해역에 대한 광역해양 조사도 진행중에 있다.

2. 울진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영향 조사

1998년 6월 울진원전 인근 어민들이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민원의 객관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한전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2월 기간중 어민대표와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어업권 등의 구체적인 조사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1999년 12월 14일 조사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조사기관은 법정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연구소와 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2년으로 하고 있다.